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된 자동차의 자진처리를 위하여 소유자 등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거주불명등록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고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함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3. 23. ~ 2017. 4. 12.(20일간)

## 2. 대 상

차량번호	차명	차종	소유자			방치장소 (보관장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21수8536	체어맨	승용 대형	이재식	611028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길 31	충북 영동군 대학로 106 영동병원 주차장

## 3. 내 용

- 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회수 또는 폐차 등의 자진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30만원,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당해 자동차는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차)되고, 말소등록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건설교통과 교통팀(☎043-740-3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3일

